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5-4호

Sep. 2025

보험 정책 동향

- 노란봉투법 개정안 국회 통과 (8.24) -

1. 개요

- 2025. 8. 24.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

2. 주요 내용

[1] 개정 핵심내용

- 사용자 범위 확대:**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. 원청, 플랫폼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교섭 대상에 포함
 - 보험사의 경우 원청이 GA 및 소속 설계사 노조의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*
 - *수수료체계의 결정, 수입의존도, 독자적 생존가능성, 교섭의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자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
- 사용자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 내지 지침 마련 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2 "사용자"라 함은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.

- 노동쟁의의 범위 확장:** 기존 '근로조건 결정'에 한정된 파업 사유가 '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' 및 '명백한 단체협약 위반'까지 확대
-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**
 - 목적적 제한:**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

- **정당방위적 면제:**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**불법행위에** 대항하기 위해 **부득이하게** 사용자에게 **손해를** 가한 경우 **손해배상책임** 자체를 면제
- **개별적 책임 산정:** 조합원 개인의 노동조합 내 역할, 참여 정도, 임금 수준,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도 등을 고려해 **손해배상 금액 개별적으로 산정**
- **감면제도 도입:**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**법원에 배상액의 감면 청구** 가능, 법원은 경제상태, 부양의무, 최저생계비 보장 등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
- **자발적 면제:**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[2] 예상되는 분쟁 양상

-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및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파업 증가
- 실질적 지배력의 인정 여부, 손해배상 감면 범위 등 다수의 법률상 분쟁 가능

3. 시사점

-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·근로시간·작업지시 구조 등 재검토 및 실질적 지배력 인정 관련 불필요한 리스크 요소의 사전 제거
- 교섭의무 발생 여부 사전 검토, 교섭 전담조직 보강,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대응책 마련
-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 결정 사전 검토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 강화
- 실질적 지배력, 손해배상 감면 기준 등에 대한 해석과 판례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여 대응 역량 확보 필요